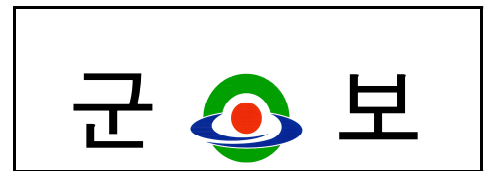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20호 2020. 3. 5.(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96호)
- 예천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97호)
-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9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96호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예천군 재
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예천세계곤충
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을 설
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예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및 자문
3. 문화관광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4. 국내·외 문화관광 교류 및 활동지원
5. 문화관광 및 지역 축제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6. 문화관광 관련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7. 예천세계곤충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엑스포 준비 및 관련 사업의 운영”을 “문화관광진흥 사업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 육성”으로, “제4조”를 “제4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유재산 등의 대부)”를 “(공유재산 등의 사용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3월말”을 “2월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엑스포의 원활한”을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그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재단법인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으로 본다.

◇개정이유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정관 변경으로 엑스포 추진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한 역할 확대에 따라 재단 명칭 변경 및 세부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코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변경 : 예천군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재단법인 설립 목적 개정(제1조)

- 현행 : 예천곤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 변경 :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 개발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 육성

다. 법인 명칭 변경(제2조제1항)

- 현행 :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 변경 :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라. 재단법인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제3조)

- 현행 : 예천곤충엑스포 추진 관련 사항
- 변경 : 지역문화관광 관련 사업, 문화관광 관련 국·도비 공모 추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수정(제7조)

- 현행 : 3월말 → 변경 : 2월말

바. 공공시설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제12조)

- 현행 : 공공시설의 위탁 → 변경 :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위탁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97호

예천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각종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인 경우
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해당 빈집이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 관리 등) 군수는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차단 조치를 취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빈집 및 빈집정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빈집이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
-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나. 빈집정비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 및 시책추진,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강조

다.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시책개발, 재원조달등에 필요한 사항

라. 빈집 정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인 경우
-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해당 빈집이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등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98호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672,000원으로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연 도	지 급 액
2020	매월 1,702,000원
2021 ~ 2022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단, 월정수당 상한액은 연간 20,71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이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 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월정수당 변경(제2조제2항)

- 월정수당을 매월 1,672,000원 지급 → 별표에 따라 지급